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大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5호

학장인사말

존경하는 동국법학가족 여러분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김경재

치열하게 달구었던 지난 여름의 뜨거움도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한 줌의 기억도 없이 온 몸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럴 때 즈음이면 늘 예쁘게 색 깃들은 나뭇잎처럼 그간의 시간이 만들어 낸 결과를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분다면 진정으로 저희 법과대학은 이번 학기 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별 합격자 순위 7위를 달성하며 그간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행정고시 법무행정직렬 영역에서는 단지 네 학교(동국대(2명), 서울대(2명), 연세대(2명), 고려대(1명))만이 합격생을 배출한 가운데 저희 법과대학 학우가 수석 합격이라는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또 노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인권에세이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학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학가족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후배들의 배움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문장학을 통하여 동국법학 후배들이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편으로 매년 학교를 직접 찾아오시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산이나 인편을 통하여 후배들을 후원하시고 공부를 독려하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존경하는 법학가족 여러분의 뜻 높은 후원과 애정 깃든 독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국법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동국법학의 아들, 딸들이 학문적으로 무궁히 발전하여 만세토록 선진법치를 견인하고 구현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과소식

1. 제57회 사법시험 국내대학 7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3위(6명)	9위(9명)	11위(5명)	7위(8명)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김상선(법 94), 김소엽(법 97), 김주오(법 00), 성혜진(법 10), 박미소(법 09), 박현우(법 07), 유재별(경찰행정 04), 고광욱(경찰행정 06) 총 8명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발표된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우리 대학 동문 8명의 이름이 올랐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에 이어 7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합격자의 5.23%에 해당한다.

한편 최고령 합격자인 김상선 동문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사법시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2. 2015년도 행정고시 법무행정직렬 수석 배출

지난 11월 17일 화요일 발표된 2015년 시행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 법무행정직렬에 김성희(법 10), 박도연(법 04) 학우가 최종 합격했다.

특히 김성희 학우는 2차 시험에서 평균 62.14점을 받아 재학 중 수석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그녀는 수험생활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3. 인권공모전 에세이 부문 우수상 수상

지난 11월 12일 목요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작품공모전 에세이부문에서 박재현(법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우가 <인권은 늙지 않는다>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금요일에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인권공모전 홈페이지(<http://www.humangongm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노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자격시험 합격자 배출

제24회 공인노무사	김동진 (법 07) 정민호 (법 07) 정준 (법 11) 한장호 (법 00)
제52회 세무사	차하늘 (법 07)
제50회 공인회계사	강보성 (법 07)

5. 2015 법과대학 학술제 개최

지난 10월 2015 법과대학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학회	일시	주제
형사법학회	10/2	정책지향적 학술 연구
민주법학회	10/5	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의 문제
국제법학회	10/6	미군 장갑차에 깔린 미선이, 효선이를 기억하십니까
공법학회	10/6	간통죄의 재구성.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사법학회	10/7	메르스, 국가책임 이전에 개인의 책임인가 의료진의 과실인가?

자유기고

<사법시험 존치 유무 논쟁>

법과대학 교수 임규철

사법시험 존치 유무는 법조인 외에도 대다수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 존폐유무에 있어 개인의 의견을 밝히자면 '굳이 사법시험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이런 주장을 법조계 밖으로 싸움이라고 폄하하지 마시라.

그 근거에 대해 첫째로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을 폐지시키고 그 자리를 꿰찰 만큼의 실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냐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로스쿨을 희망하는 비법학과 학생의 경우 법이라는 영역을 이전까지 접해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사법시험 응시자 수 대부분은 법대 출신으로서 비록 눈에 확연히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무의식 속에 학부과정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안에서 터득한 나름대로의 법적 사고 능력이 웬만하면 자리를 잡고 있다. 3년 이내에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로스쿨 변호사 상위 계층으로 한정될 것이다. 그 상하의 차이가 크고 허

리의 분포도는 약할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굶주린 변호사라는 속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기회'의 문제이다. 과연 무슨 기회를 말하고자 하는 물음에 크게 두 가지로서의 기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두 번째가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대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로스쿨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누구에게나 있느냐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들이 왜 이토록 사법시험의 폐지에 민감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천에서 용' 또는 '사법시험은 곧 희망의 사다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있어서 노력과의 싸움 혹은 계층 앞에서 마주하는 자기반성일지언정 본질적으로 '돈'과의 싸움은 아니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로스쿨의 등록금은 사립 대학교를 중심으로 장난이 아니며 더 올라갈 것이다. 매년 그 장학제도마저도 '소폭'이 아닌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정부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회 앞에서 기존의 사법시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시되었던 '시간과 노력'이 아닌 로스쿨 제도가 보여주는 '현실' 앞에서 미리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내걸며 사법시험은 곧 퇴보라고 외치는 로스쿨 제도 찬성자들의 의도조차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법정 등록금 외에도 많은 변호사 시험 대비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때마다 개인 비용으로 신림동 강의를 듣는다. 학교수업으로는 합격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림동에서 공부할 시 사시비용과 맞먹는 이 비용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이 비용은 온라인 및 야간 로스쿨 도입 시도 동일하게 들어갈 것이다.

비법학과 법조인의 양성 및 특권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로스쿨 제도의 찬성 주장이 무조건 틀린 말도 아니기에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완전한 폐지가 아니다. 두 개의 제도의 단점을 극복한 동시운영이다.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통한 질높은 법률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자기 진영의 논리만 보지를 말고 역지사지 할 필요가 있다.

무수한 법과대학들이 존폐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법과대학들이 죽고 로스쿨만 번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죽기 때문이다. 법무부나 대법원 등 관련 기관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이기주의와 연결된 중우민주주의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